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3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채유미, 장상기,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김소양, 이병도, 박순규,  
이영실 의원 (16명)

## 1.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장애정도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를”을 “장애를”로, “중증장애에 해당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의회의원 중 <u>중증장애</u>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증장애의원</u>"이란 서울특 별시의회의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u> <u>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u> <u>를 가진 의원</u>을 말한다.</p> <p>2. "<u>의정활동 보조인력</u>"이란 <u>중</u> <u>증장애의원</u>이 의정활동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p>	<p><u>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u>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 ----- <u>장애</u>----- ----- ----- ----- ----- ----- ----- ----- -----</p> <p>제2조(정의) ----- ----- ----- 1. "<u>장애를 가진 의원</u>"----- ----- ----- ----- <u>장애</u> <u>의 정도가 심한</u> ----- ----- ----- 2. ----- <u>장</u> <u>애를 가진 의원</u>----- ----- -----</p>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 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

3. ----- 장애  
를 가진 의원-----

-----  
-----  
-----.

4. ----- 장애  
를 가진 의원-----

-----  
-----.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를 가  
진 의원-----

-----  
-----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  
----- 장애를 가진 의원-----

-----  
-----.

② -----

-----  
-----

시설 또는 장비의 보장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장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  
-- 장애를 가진 의원-----  
-----.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  
장애에 -----  
-----.

② ----- 장애를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장애  
에 -----  
-----.

제6조(지원범위) ----- 장애를 가진 의원-----  
-----  
-----  
-----.

1. 장애를 가진 의원 -----  
-----  
--
2. 장애를 가진 의원-----  
-----
3. 장애를 가진 의원-----  
-----  
-----

4.·5. (생략)

6.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  
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  
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  
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  
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  
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  
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  
임기제 8급 공무원의 연봉상한  
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6. ----- 장애를 가진  
의원-----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  
-----  
-----  
-----  
-----  
-----  
-----  
-----  
-----  
-----  
-----  
-----  
-----  
-----  
-----  
-----

② -----  
-----  
-----  
-----  
----- 장애를 가진 의원 -----  
-----  
-----  
-----  
-----